변호인 최후 변론

이석기 의원 등 내란음모사건 공동변호인단

변론을 시작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 정예화된 지하혁명 조직 ‘RO’
- 혁명의 결정적 시기가 임박한 상황으로 판단
- ‘전쟁대비 3대지침’, ‘세포결의대회’ 통해 사전결의
- 5.10 및 5.12 통해서 **내란 음모, 내란 선동**
- **반국가단체 찬양, 고무, 선전 및 동조**
- **이적표현물 소지**

내란음모 실행행위

5.10 및 5.12 통해
내란음모 결의를 했다

내란폭동 준비행위를 했다

혁명의 결정적 시기로 판단했다

지하혁명조직
RO가 존재한다

3인 모임은
RO 세포모임이다

근본적인
반전평화운동을진행했다

5.10 및 5.12 통해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하여 논의했다

반전평화운동을
전개했다

혹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위기 상황에 대하여 우려했다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 피고인들은 지하혁명조직 ‘RO’ 총책, 중간간부로 활동
  - 현 정부 전복, 사회주의혁명 완수를 목표로 철저한 사상 무장과 엄격한 위계질서로 정예화된 지하혁명조직 ‘RO’
  - 피고인들은 총책 또는 중간간부로서 조직원 사상학습과 실천투쟁을 지도하고 조직의 지침을 결정 · 시달
  - 현 정부 전복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파괴하려는 국헌문란 목적을 가지고 지속적 활동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2)

- 2013년 3월경, ‘RO’조직은 혁명의 결정적 시기가 임박한 상황으로 판단
  - 북한, 2012년 말 장거리 미사일 발사, 3차 핵실험 등에 이어 2013년 3월 5일 ‘정전협정 백지화’선언
  - 현 정세를 ‘전쟁상황’ 즉 ‘혁명의 결정적 시기’가 임박한 상황으로 판단
  - 강연 등을 통해 이러한 정세인식을 조직원들 사이에 공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3)

- ‘RO’조직은 ‘전쟁대비 3대지침’, ‘세포결의대회’ 통해 폭력적 방법으로 혁명완수 결의
  - 조직원들에게 ‘전쟁대비 3대지침’을 시달하고 ‘세포결의대회’ 및 ‘정세강연’ 등을 개최
  - 전쟁시 공포감을 조장하고, 혁명적 낙관주의로 무장하여 빨치산과 같은 배후 군사전을 준비해야 한다고 선동
  - 혁명의 결정적 시기에 무장봉기 등 폭력적 방법으로 정권 장악, 혁명 완수하도록 조직원 결의를 다지는 행사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4)

- 피고들은 5.12 행사에서 참석한 'RO'조직원과 함께 내란음모

형법 제90조 제1항

* 전쟁상황에 전국적 범위에서 군사적 결전을 수행할 폭동의 방법 또는 파괴를 위한 방편 등을 논의 · 발표
* 피고인 이석기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총공격의 명령이 떨어지면" 물질적 · 기술적 조치를 하자는 취지의 지시
* 'RO'조직원들 모두 유사시 명령이 내려지면 전국 다발적인 폭동을 통모함으로써 내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음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5)

- 피고인 이석기, 피고인 김홍열은 공모하여 5.10 및 5.12 행사에서 내란선동 형법 제90조 제2항
  - 5. 10 및 5.12 통해 다른 'RO'조직원들에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
  - 혁명의 결정적 시기를 맞아 '한자루 권총 사상'으로 무장하여 '물질적·기술적 준비'를 철저히 함으로써
  - '조국통일, 통일혁명'을 완수하자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등 내란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6)

- 피고인들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고무선전 및 동조
  - 피고인들은 폭동을 모의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및 미국에 대한 적개심을 표출하며, 북한 주체사상에 입각한 정세인식
  - 선군정치와 미사일 · 핵무기 개발을 옹호, 북한 대남혁명론에 따른 물질적, 기술적 방안 등을 논의 · 발표 및 찬동
  - 반국가단체인 북한 또는 그 구성원 등의 활동을 찬양 · 고무 · 선전하거나 이에 동조
- 피고인들은 각 이적표현물을 소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검사 공소장의 논리 구조

공소장 논리구조 개요

내란음모 선동 공소유지의 필수품 – ‘RO’

40분 본강연

1시간의 분반토론

배후에 지하혁명조직

‘RO’가 있다

참석자 정세인식,
발언 내용 많은 편차

대다수 참석자들은 발언하지
않거나 발언내용 알 수 없음

내란 폭동의 결의 자체가 없음

내란음모의 주체가 'RO'

1. 'RO'가 실재해야 한다!

*'RO'가 실재하려면 명칭, 강령, 조직체계, 조직규율, 가입절차 있어야 함

*조직원들과 그 활동 내용이 있어야 함

*5.12는 'RO'조직원들의 비밀회합이어야 함

2. 폭동을 모의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RO'는 당시 정세를 혁명의 결정적 시기로 인식했어야 함

3. 강연 전에 사전 준비를 했어야 한다!

* 폭동모의를 위해 사전에 기획하고 준비했어야 함

검사가 제출한 증거

- 이성윤 진술 + 3인 모임 녹음 파일 + 기타 압수물

이성윤 진술

명칭, 강령, 조직체계,조직규율,조직원들을 갖고 있는 등 실재하는 지하혁명조직임을 주장

3인모임 녹음파일

3인모임이 바로 'RO'의 세포모임, 이들이 내란음모를 위한 준비행위를 했다고 주장

기타압수물

위 3인모임을 전체 'RO'모임의 존재 및 활동의 근거로서 유추, 일반화

→ **이렇게 준비된 세포모임들이 당시 정세를 혁명의 결정적인 시기라고 판단하고, 5.12 통해 내란폭동을 모의함**

검토 및 평가 #1

- 이성윤 진술은 허위로 작출한 것
  - 이성윤과 국정원 수사관이 공모하여 진술을 통해 'RO'관련 내용을 허위로 작출
  - 명칭, 가입식, 가입절차, 조직체계, 강령, 조직규율, 조직원, 기왕의 활동내용 등 모든 내용을 허위로 작출
  - 이성윤이 2004년 이후 수원지역에서 활동한 모든 것을 'RO'의 지시에 의한 활동으로 왜곡

검토 및 평가 #2

- 사적 만남에 불과한 3인 모임을 'RO'세포 모임으로

  * 몇 가지 보안책을 'RO'의 조직보위로 과장하고, 회비 3만원을 걷은 것을 'RO'의 재정분공으로, 이성윤이 이 사건 증거로 삼을 목적으로 스스로 작성해서 3인 모임에 제출한 총화서를 'RO'의 총화서로 포장한 후 3인모임이 바로 'RO'의 세포모임이라고 단정

  * 3인 모임은 건강과 돈 가정형편으로 위축되어 있던 이성윤을 지지, 격려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당 안밖의 여러 상황에 대해 공유하고 논의하며, 학습을 함께 했던 동문 선후배간 사적인 모임

  * 3인 모임에서 내란음모의 준비를 준비한 사실 전혀 없고 그 근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과 이성윤은 녹음파일 내용을 악의적으로 왜곡, 과장했을 뿐

검토 및 평가 #3

- 기타압수문건+이성윤 추측+국정원의 상상력
  - 검사는 3인모임과 유사한 세포모임이 존재하며, 5.12 강연회가 전체 'RO'모임이라고 주장근거를 제시 못함
  - 5.12 정세강연회가 'RO'모임이라는것 자체가 국정원과 이성윤의 추측에 불과

➡ **이성윤은 20여년간 활동을 했기 때문에 잘 안다는 황당한 추측으로 위 정세강연회 참석자 전부를 'RO'의 조직원으로 지목**

소결

① RO라는 지하혁명조직은 존재하지 않음

② 피고인들이 'RO'의 구성원이라는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님

③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당시의 정세를 혁명의 결정적 시기로 인식하지도 않았음

④ 내란 음모를 위한 사전준비나 기획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음

소결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국정원이 지하혁명조직 'RO'라는 가상의 조직체를 전제로, 5.12 강연회에서 나왔던 발언 중 일부를 짜깁기하고 전체의 취지와는 무관하게 왜곡, 과장한 후, 여기에 상상력을 더해서 만들어낸 소설일 뿐

변론 전개 순서

변론 전개 순서

- 지하혁명조직이라는 ‘RO’가 존재하는지
- 피고인들이 그 구성원인지
- 내란음모 및 선동죄의 구성요건은 무엇인지
- 5.12 강연회의 주체와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 당시의 정세를 혁명의 결정적 시기로 인식하였는지
- 내란 음모를 위한 사전준비나 기획을 한 사실이 있는지
- 5.12 강연회에서 내란을 결의하고 이를 모의하거나 선동 했는지
- 나아가 5.12 강연회 이후 내란음모를 위한 준비나 실행을 했는지

‘RO’는 실재하는가

피고인들은 지하혁명 조직원인가

피고인 이석기

- **선거를 통한 진보정당 집권에 확신갖고 진보정당 선거 지원에 뛰어들어**
  출소 후 지난 10년간 여론조사기관, 정치컨설팅 회사를 잇달아 설립하여 대표로 활동하면서 진보정당의 선거컨설팅 및 여론조사의 과학화에 주력

- **2012년 19대 국회의원 당선 이후, 국익을 위한 의정활동에 역점**
  미래부장관 후보자 김종훈 CIA경력 폭로, 주한미군 방위분담금 미사용액 폭로, 종편 재승인 심사 등이 대표적 의제

피고인 이상호

- **수원시 '실업 해결' 15년 한 우물에서 '사회적 기업'의 산파로**
  1998년 IMF부터 '수원 실업극복대책위원회'를 이끌며 빈곤 해결에 매진. 수원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대표를 맡아 사회적기업 컨설팅을 통해 지역 내 사회적기업 육성에 주력

- **'삼성 해고자 1호'로 시작된 사찰 꼬리표 20년**
  노조설립 과정에서 해고된 최초의 삼성 노동자. 노동현장을 떠난지 20년 후에도 삼성측 사찰은 사라지지 않았고, 2013년 2월에는 국정원 불법 사찰건까지 경험.

피고인 홍순석

- **낮은 곳에서 봉사하며 지역사회에 뿌리내리는 활동**
  청년회 활동부터 시작하여 각종 봉사활동을 꾸준히 펼치며 지역 민심의 아래를 파고들며 지역사회에 뿌리내려온 지역운동가. 19대 총선에서 국회의원 예비후보(안양시 동안을)로 출마

- **지난 10년 원내외를 넘나들며 정당운동에 전념**
  지역 주민 활동에서 찾은 진보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위해 원내외 활동에 전면적으로 뛰어들었음. 18대 국회 김선동의원 수석보좌관을 맡아 한미 FTA 협상의 문제점을 파헤친 실력파.

피고인 한동근

- **수원 최초 의료복지협동조합을 설립한 협동조합 NGO 대표**
  수원 최초의 의료생협인 '수원새날의료생협'을 설립하여 수원시민과 의료복지 소외계층의 버팀목으로 활동. 2013년부터는 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을 맡은 수원의 대표적 NGO 리더

- **수원시와 경기도의 주요 당직을 거치며 풀뿌리 정당활동 경험 축적**
  민주노동당 팔달구 부위원장, 영통구 위원장, 수원시당 부위원장을 거쳐 경기도당 사무처장, 통합진보당 경기도선관위원장을 역임

피고인 조양원

- **카톨릭 노동사목으로 출발하여 노동자 시의원 당선까지**
  카톨릭 노동사목으로 노동자 교육사업을 펼치며 사회활동 시작. 1995년 당시 무명의 여성 노동자를 무소속 시의원으로 당선시킨 이래, 총선과 대선에서 조직팀장, 집행위원장 경험을 쌓아온 실전형 선거전문가.
- **전문여론조사기관 이끌며 진보정당 선거운동지원**
  2010년 지방선거에서 야권단일후보인 민주당 시장후보의 공동선본장을 역임하여 당선. 2012년부터 여론조사 전문기관 '사회동향연구소' 대표로 활동하며 진보정당 선거를 지원

피고인 김홍열

- **양주시민의 대표적인 민원해결사**
  2004년부터 지역 현안인 상수도 민영화 철회 문제, 교육청 주민참여예산 문제, 학교무상급식 문제 등을 팔걷어 부치고 해결해온 지역사회 운동의 대표격 인물
- **도의원 선거 38% 득표, 검증된 지역 정치인**
  2006년 첫 시의원 도전을 한 다음, 2010년 도의원으로 출마하여 38% 득표. 2013년부터 경기도당 위원장으로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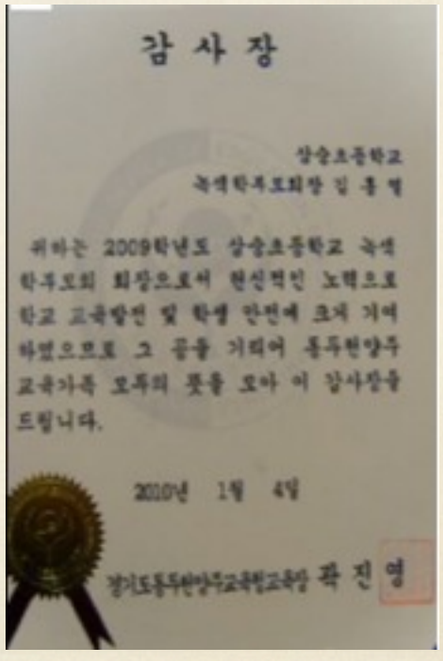

감 사 장

상송초등학교
녹색학부모회장 김 홍 열

위하는 2009학년도 상송초등학교 녹색학부모회 회장으로서 헌신적인 노력으로 학교 교육활동 및 학생 안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그 공을 기리어 동두천양주교육가족 모두의 뜻을 모아 이 감사장을 드립니다.

2010년 1월 4일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청교육장 곽 진 영

피고인 김근래

- **분양가 공개 이끌어낸 하남시민운동의 '간판'**
  2003년 전국 최초로 납세자 소송을 주도하여 2005년 주민소송법 제정의 계기 마련. 경기도 최초로 주민감사 청구를 주도하여 아파트 분양가 공개하도록 함.
- **전국최초 주민소환투표 성공, 초등학교 교과서에 등재**
  2006년경 하남시 주민소환운동본부 공동본부장으로 전국 최초 주민소환 투표를 성공(현재까지 유일). 2013년 경기도당 부위원장으로 활동

소결

- 2000년 이후 피고인들은 정당인 또는 시민운동가로 지역 사회에 뿌리내려왔음.
- 지난 10년간 이들의 행적 어디에도 폭력혁명을 통해 정부를 전복하고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위해 준비한 사항이 없음.
- 검사가 피고인들을 'RO'의 조직원이라고 지목하는 근거는 오직 이성윤의 진술 뿐임.

이성윤, 진실인가 소설인가

명칭	2010 내일회 2013 RO
강령	2010 강령없다 2013 강령있다
5대 의무	2010 진술없음 2013 철저준수
제보동기 제보경위	2010 3대세습 2013 천안함사건

국가정보원 수사관 ✖✖✖의 증언

- 2010. 7 경 이성윤 처음 만남
- 2010. 8 경 이성윤이 "홍순석을 만날테니 녹음기를 구해달라"고 함
  이에 ✖✖✖는 "들키지 않게 조심하라"며 국정원 사무실에 있는 녹음기를 전달함
- 이후 ✖✖✖는 2010. 8.까지 3년 동안 매주 1, 2차례 이성윤을 만나 녹음기를 제공하면서 10~20만원 가량의 비용(공금)을 지급함

국정원은 왜
2010년 작성 진술조서를 숨기려 했을까

이성윤의 초기 진술서의 정체

구분	2010 이성윤 진술조서	이 사건 공소사실
조직 명칭	내일회	RO
강령	강령은 없다	3대 강령 지도이념은 주체사상 / 자주 · 민주 · 통일 실현 / 주체사상 보급 전파
5대 의무	내일회가 5대의무가 있다는 진술 없음. 다만, 일반적으로 지하조직은 5대의무가 있다고만 진술	‘조직보위의 의무’ ‘사상학습의 의무’ ‘재정방조의 의무’ ‘분공수행의 의무’ ‘조직생활의 의무’ 가입식 당시 ▲▲▲로부터 들음
조직 체계	총책 – ◇◇◇ 동부권역, 남부권역, 중서부권역, 북부권역, 도사업, 중앙파견	총책 – 이석기 동부권역, 남부권역, 중서부권역, 북부권역, 중앙파견, 중앙위원회(추후 중앙위원회 삭제하고 청년팀 추가)
제보동기	3대 세습에 실망 천안함 언급 없음	천안함에 크게 실망
제보경위	없음	2010. 5.경 국정원에 전화 국정원 홈페이지에 연락처를 남김

이성윤은 누구인가?

국정원의 각본에 따라 진술 수시로 번복

매주 1~2회 국정원에 보고하고 지시받는 프락치

이성윤의 진술은 모두 거짓말

RO란 실재하는가

RO의 명칭

- 검사

  * ‘RO’는

    이석기 피고인이 **총책**을 맡고

    5.12. 강연회 참석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지하혁명조직의 **정식 명칭**

  * ‘O’, ‘내일회’, ‘산악회’는 **위장 명칭**

RO의 명칭

- 이성윤의 진술 – 하위 이미지구성
  - 2010. 진술조서 – 일관되게 조직명을 '내일회'라고 진술하고 있고 'RO(혁명조직)'는 보통명사로서 언급
  - 2013. 국정원 진술조서 – 2004. ▲▲▲와 가입식 때 'RO' 들었다는 진술
  - 법정 진술 – 일반명사냐 고유명사냐는 질문에 "명칭은 중요하지 않다."고 얼버무림
- 'RO'라는 조직명칭 자체가 국정원과 이성윤의 작명일 뿐

RO의 결성시기

- 검사 주장
  - 공소장에 특정되어 있지 않음
  - 다만 이석기 피고인이 2003. 8 출소한 직후 결성한 것이라고 추측

국정원은 RO결성시기를 이석기 피고인 출소 이후로 맞추기 위해 무엇을 하였는가?

RO의 결성시기

- 번복 1
  - 이석기 의원 출소 이전에 한 △△△과의 가입식 관련 진술 번복

    "△△△과의 가입식은 정식이 아니었다"
- 번복 2
  - 이성윤이 2004년 이전에 RO의 전단계인 학모, 이끌 단계의 활동을 했다는 진술 번복

    "나는 학모, 이끌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RO조직원이 되었다."

결국 RO의 결성시기를 총책인 이석기 피고인 출소 이후로 맞추려다 보니 이와 모순되는 이성윤의 과거 진술을 모두 번복 시킴

RO의 강령

- 이성윤의 2010. 진술조서
  “‘RO’는 조직보위를 위해 강령이나 규약을 따로 만들지 않고 있다”
- 이성윤 2013. 진술조서
  “‘RO’는 3대 강령이 있다”
- 오락가락 이성윤 진술 외에 다른 증거 없음
- 3인 모임 등 녹음파일 어디에도 강령 언급 없음

➡ **‘RO’의 강령은 2013년에 와서야 국정원과 이성윤이 만들어 낸 창작물!**

RO의 노선

- 검사 ‘RO’의 북한연계증거 제출 못함
  피고인들이 폭력혁명 추구한다는 증거 제출 못함

- 이성윤 “전민항쟁노선 포기 하지 않았다” 는 주장 뿐

3인 모임 등 이 사건에서 증거로 채택된 녹음파일 어디에도 ‘폭력혁명’또는 ‘전민항쟁’에 대한 언급 전혀 없음.

▲ 오히려 선거운동에 대한 진지한 고민만 현출되었을 뿐임

'RO'의 총책

- 검사 – 피고인 이석기가 'RO'의 총책
  - * 이성윤 진술(2013. 7. 9 국정원 진술조서)

    ① 2012. 4. 총선을 전후하여 여러 행사에서 이름이 자주 거론

    ② 이상호 "동지여 너는 나다. 내가 바로 이석기 동지다" 구호제창

    ③ 홍순석 "이석기 의원은 남쪽에서 역할이 있다. 후배들에게 정치지도자라는 인식을 시켜줘야 한다"

    ④ 피고인 이석기 2013. 5. 10 곤지암 회합 때 참석자들을 꾸짖으며 밤늦게 모인 사람들을 해산시킴

  - ➡ **이성윤은 이를 근거로 이석기가 틀림없는 'RO' 총책이라 확신**

‘RO’의 총책

- 반박

“현재 RO총책으로 추정되는 ◇◇◇…”
“이석기(국회의원, 「RO」중앙팀)”

조양원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서

국정원은 2013년 7월 26일까지 공소외 ◇◇◇를 RO총책으로 지목함.

* 그 후 한달 만에 이 사건 수사가 공개되면서
  - 이석기 피고인이 지하혁명조직 ‘RO’의 총책으로 둔갑!
* 이석기 피고인이 총책이라는 증거는 이성윤의 진술뿐임
* 그것도 이성윤의 추측이라고 이 법정에서 실토

'RO'의 총책

- '정치지도자'가 '총책'?
  - 홍순석, "이석기 의원은 남쪽의 정치지도자"
  - 이석기 피고인은 통합진보당의 몇 안되는 국회의원으로서 진보당 내의 지도격 인사임은 분명(진보당에서 국회의원은 당연직 중앙위원)
  - 그를 존경하는 홍순석이 전국의 정치지도자로 평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발언. 총책이라는 주장은 근거없는 비약

'RO'의 총책

- "동지여 너는 나다. 내가 바로 이석기 동지다"란 구호제창이 'RO'총책의 근거?
  - 이상호 피고인이 2012. 8 경기도당 행사에 위와 같이 구호 제창
  - 당시 이석기 피고인은 국회의원직 사퇴를 둘러싸고 국내 정치에서 핫이슈
  - 이석기 피고인을 지지하는 청중들을 상대로 이석기 의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러한 구호는 자연스러움
  - 진보당 이정희 대선후보 출정식에서 '동지여 내가 바로 이정희다'는 자세로 대선투쟁을 힘차게 벌이자는 등의 발언은 흔히 등장

'RO'의 총책

- 2013. 5. 10. 곤지암 회합의 해산 주체?
  - 녹음파일에서도 확인
    김홍열 피고인이 당시 강연이 취소되었음을 고지
    이석기 피고인의 짧은 인사말
    김홍열 피고인 "해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직원 하대가 아니라 대학후배인 김근래 피고인에 대해 늦게 온 것을 질책한 것일 뿐
  - 이날 모임의 소집 주체도 아니었고, 해산시킨 주체도 아니며, 5.12. 마리스타 수도회에서의 모임의 소집주체도 아님

‘RO’의 총책

- ‘대표’라는 호칭 사용
  - 이석기 피고인이 과거 CNP전략그룹 대표라는 공식직함으로 10여년간 활동
  - 이에 따라 사회자 김홍열이 습관적으로 ‘대표님’이라 칭한 것
  - ‘RO’의 총책을 지칭하는 공식 호칭이 ‘대표’라는 근거도 없음
  - 이를 두고 ‘RO’총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 비약

'RO'의 조직체계

2010. 9

2013. 국정원

2013. 검찰

'RO'의 가입절차 및 가입식

- 검사
  - * 'RO'는 학습모임, 이념써클 등을 통해 예비조직원을 철저히 사상학습 시킨 후 그 중 사상성향이 투철한 자를 엄선하여 비밀스러운 가입절차를 거쳐 조직원을 포섭
- 이성윤 진술
  - * 이성윤은 2013.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에서 'RO'가 위와 같은 가입절차와 가입의식을 진행한다고 진술하면서 자신이 ▲▲▲, △△△과 함께 한 자신의 경험과 ●●●의 사례를 그 근거로 제시
  - * 정작 이성윤은 'RO'의 가입절차와는 다른 약식으로 진행했다고 진술
  - * ●●●과 관련해서는 직접 보지 않아서 구체적인 가입절차를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

‘RO’의 가입절차 및 가입식

- 결국 ‘RO’ 의 가입절차는 이성윤의 추측에 불과하고
- 이성윤의 경험 사실에도 부합하지 않음

3인 모임이 ‘RO의 세포모임’인가

3인 모임의 배경

* 홍순석이 이성윤을 만난 배경 : 지역에서 떠나지 않고 활동하는 몇 안 되는 후배가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을 중단한 것이 마음 아파서 후배를 챙기기 위해 만나게 된 것

* 홍순석이 한동근을 만난 배경 : 한동근이 '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장'이 되자 2012. 7. 말경 한동근에게 진보당 분열사태에 대한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한 만남을 제안하고 비슷한 시기에 이성윤에게도 한동근과 함께 하자고 제안

* 홍순석이 3인 만남을 시작한 배경 : 이성윤과 피고인 한동근은 대학 선후배 사이로서 당 활동을 함께 한 경험도 있었음

3인 모임의 성격

'RO 세포모임' X

대학 동문간 단순 친목 모임 X

지역에서 활동하는 운동권 동문 선후배가 서로 생활을 챙겨주고, 사업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고, 나아가 진보활동가로서의 자각을 높이기 위해 이따금씩 학습과 생활평가('총화')를 하였던 모임

3인 모임이 'RO 세포모임'이라는 검사의 주장

- 총화서 작성을 지시했다
- '전쟁대비 3대 지침'을 하달했다
- '세포결의대회'를 실시했다
- 2013. 5. 10. 및 5. 12. 회합 참석을 지시했다
- 'RO 5대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

'RO'가 총화서 작성을 지시한 것인가

- 검사 : RO의 5대 의무에 입각하여 총화서 작성을 지시했다
- 반박
  - 일반적인 '사업평가'의 운동권 용어인 '총화'는 8,90년대 학생 운동권들은 누구나, 어떤 모임에서나 하는 것이었고, 평가 항목도 3가지, 5가지, 6가지 등 다양
  - 3인 모임에서는 불규칙하고 간헐적으로 '총화'를 진행했고, 구두로 진행한 적도 있음

'RO'가 '전쟁대비 3대 지침'을 하달하였나

- '전쟁대비 3대 지침'이라는 언급 자체가 없었음
- 홍순석은"정세와 관련하여 지침 3가지가 왔는데"라고 언급
- '지침 3가지'도 내용이 왜곡됨

검사	홍순석 발언
비상시국에 연대조직을 빨리 꾸릴 것	비상시국회의와 같은(광범위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연대기구를 빨리 꾸리고
대중을 동원해서 광우병 사태처럼 선전전을 실시할 것	광우병 촛불집회와 같이(대중과 함께하고 대중의 공감을 불러올 수 있는 방식으로) 반전평화활동
미군기지, 특히 레이더기지나 전기시설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것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서 모일 수 있는 연락체계와 음식물을 준비

'RO'가 '세포결의대회 지침'을 하달하였나

- 검사 : '세포결의대회 지침'은 'RO'가 하달한 지침이다.

- 반박

  진보당 긴급전국지역위원장단 연석회의에서 '당원들이 관계하고 있는 다양한 공간에서 반전평화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자'고 결의하자, 홍순석이 자신의 임의적인 판단으로 3인 모임에서 북한 영화 '월미도'를 시청

  *북한영화 '월미도' : 영화진흥위원회 발간 〈통일 한국인이 봐야할 북한 영화 50선(2002)〉에 '북한의 대표적인 전쟁 영화' 로 수록

'RO'가 '세포결의대회 지침'을 하달하였나

- 검사 : 북한 전쟁영화 '월미도'를 보고 전쟁 결의를 다졌다
- 반박 : 반전평화실천의 결의를 다졌다.

홍순석의 시청 소감

"전쟁을 원하는 데는 없어. 북도 전쟁을 원하지는 않잖아. 미국도 전쟁을 원하지는 않아."

"전쟁반대 평화실현 이런 대중운동이 벌어지지 않는 한 전쟁이 일어나면 그냥 굉장히 어려워지겠더라고."

"전쟁 반대 분위기도 대중적으로 잡는 게 중요하죠. 그런 임무를 할려면 자기 위치에서 대중운동을 해야 되고. 그 역할이 지금 우리한테 중요하죠."

'RO'가 5.10., 5.12. 행사 참석을 지시하였나

- 검사 : 5.10, 5.12 회합은 'RO'가 단선연계원칙을 깨고 모일만큼 심각한 내란음모 회합이었다.

- 반박 : 한동근은 홍순석에게 사회적기업 워크샵 때문에 5.10. 강연에 참석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홍순석도 달리 참석을 지시하지 않았다.

3인 모임은 'RO의 세포모임'인가

3인 모임에서 오직 이성윤만이 'RO'의 조직원이 되고자 했을 뿐이다.

‘RO’는 없다 – 소위 5대의무

'RO'의 5대 의무

- 이성윤의 진술
  - 2010. 진술조서와 2013. 진술조서 및 법정 진술이 상이하여 믿기 어려움
    - 2010. 진술조서 - '내일회'조직에 5대 의무가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언급 없음

      * 다만, 지하혁명조직은 보안, 학습, 회비납부, 분공수행, 조직생활 등의 5대 의무가 있다고 일반론으로 진술
    - 2013. 진술조서와 법정 진술 - 조직보위의 의무, 사상학습의 의무, 재정방조의 의무, 분공수행의 의무, 조직생활의 의무라는 말로 용어를 바꾸어 사용

      * 이것도 2004. 가입식 당시 ▲▲▲로부터 들었다고 진술

'RO'의 5대 의무

- 이성윤의 진술
  - 이성윤의 2013. 진술이 사실이라면 사건 초기인 2010. 진술 조서에는 왜 '일반론'으로만 기재되었는지 의문!
  - 결국, 국정원이 2013년에 이석기 피고인을 정점으로 한 'RO'사건을 만들어 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5대 의무'를 창조해 냄

‘RO’의 5대 의무

2010년	2013년
‘내일회’의 의무로 언급안함	RO의 의무로 언급
▲▲▲로부터 고지 언급안함	▲▲▲로 부터 고지
회비 언급 안함	회비 언급

'RO'의 5대 의무

조직보위	통신보안수칙, 컴퓨터 보안수칙, 외부활동조직보위수칙
사상학습	수시로, 또는 주요한 계기마다 주체사상을 학습
재정방조	매월 십일조 회비 납부
분공수행	조직의 지시는 반드시 달성
조직생활	상부의 지시에 철저히 복종, 이탈시 사고처리

'RO'의 5대 의무

조직보위

아무도 모르게	약속 장소 롯데리아
노트북전원OFF	노트북 전원 ON
핸드폰전원OFF	언제나 전원 ON
약속메모 안함	모임 기재된 한동근 수첩
시차두고 장소이탈	언제나 같이 헤어짐

'RO'의 5대 의무

사상학습

1년동안 ➡ 하지 않음

RO의 필수의무 ➡ 읽지도 않고 참석

수시로 중요계기마다 ➡ 1년간 학습시간 총 겨우 70분

'RO'의 5대 의무

재정방조

매월 십일조 납부 → 센터장 월급 250만원 중 3만원 납부

2004년도 3만원 → 2013년 3만원 (10년 동안 인상률 0%)

'RO'의 5대 의무

분공수행

2004년 이후 모든 당활동이 RO 지시 → 민주노동당은 당직, 공직 당원의 투표로 결정

급식센터장으로 취임 RO의 지시 → 지휘성원도 아닌 이상호의 제안으로

조직원 확대는 핵심분공 → 10년 동안 한 명의 회원도 확보 못함

'RO'의 5대 의무

조직생활

- 시간엄수 → 자주 지각하는 홍순석
- 학습시 경어 → 항상 반말하는 선배
- 조직이탈 경위확인 → 전화 한번 하고 불참해도 찾지도 않은 이상호

운영원리 : 단선연계, 복선포치

결정적 시기

↓

단선연계, 복선포치 포기

↓

5.10, 5.12에
RO조직원 총집결

의문점1

2013. 1
RO 조직원
70명은
왜?
집결했는가

의문점2

RO 조직원
신원 노출하고도
왜?
5.12 이후
아무것도 안했음

소결

- 이 사건에서 검사는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한 것이 하나도 없음
- 검사가 제출한 그 외 증거들2003년 이전 이석기 피고인의 메모
  - 김근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uro.hwp 파일 등
  - 이들은 모두 일반론을 설시한 것에 불과
- 이석기 피고인이 'RO'의 총책으로서 조직을 만들고, 조직원을 규합하여 일정한 조직체계를 만들었다는 증거는 하나도 제출 못함
- 결국 'RO'는 국정원과 이성윤이 합작해 낸 창작물에 불과
  - 검사가 창작물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것은 너무나 당연

소결

가입절차?

강령?

조직체계?

가입식?

노선?

결성시기?

총책?

명칭?

단선연계?

5대의무?

3인 모임?

공소제기 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RO'는 국정원과 검찰이 만들어낸 상상 속의 조직이다.

5.12 강연은 내란음모, 내란선동인가

내란음모 · 선동죄의 구성요건

내란죄의 구성요건

1. 2중의 목적 Ⓐ **국헌문란의 목적** 으로 한 폭동행위를 준비한다는 인식·의욕(고의)

내란죄를 실현하여 결과 초래할 목적

2. 폭동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것에 대한 Ⓑ **명백한 인식·확인**

3. 실질적 위험성 Ⓒ **통모·합의의 구체성**

Ⓓ **국헌문란을 실현시킬만한 직접성**

국헌문란의 목적

단순 정부 비난, 정책 비판, 합법적인 절차에 의한 정부 · 내각의 경질 도모

해당 X

헌법에 규정된 권력분립 · 의회제도 · 선거제도 및 사법권의 독립 등 –〉국가 기본조직 파괴

해당 O

폭동 준비행위라는 것에 대한 **명백한 인식·확인**

*폭동 – 다수인이 결합하여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의 폭행 · 협박

단순히 범죄 결심을 외부에 표시 · 전달

해당 X

객관적으로 보아 폭동행위 실행을 위한 준비 행위가 명백히 인식 · 확인되어야

해당 O

통모·합의의 구체성

범행 시간 · 장소 · 방법 등의 계획 · 일정 세세히 확정될 필요 없으나

피해의 정도, 범행의 대상 · 수단 · 방법 등 상당한 정도로 구체화되어야 함

국헌문란을 실현시킬만한 직접성

구국학생총연맹 사건(대법원 1968. 3. 5. 선고 66도1056 판결)

"민중이 시위에 호응함으로써 폭동화하면 국회가 스스로 해산하게 되리라는 사태의 현출을 예상한 것에 불과한 경우… 직접적인 국헌문란 의도 없다."

[소결] 구성요건 충족 검토

- 1. 단순한 정세강연 및 인식 공유의 자리
  =〉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과 내란 결과 일으킬 목적 X
- 2. 폭동을 위한 준비행위로 인식되는 내용과 행위 X
- 3. 폭동행위에 대한 통모 · 합의 없고, 피해의 정도, 범행의 대상, 수단, 방법 등 구체화 X
- 4. 발언으로 인한 국헌문란 실현시킬 직접성 X

=〉 내란음모 해당하지 않음.

[소결] 구성요건 충족 검토

- 내란선동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
  한반도 정세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 제공과 진보당 전쟁반대 평화실현 활동을 위한 내용
  - 강연 내용에 국헌문란 실현시킬 목적이나 구체성 · 실질적 위험성 X
  - 내란선동에도 해당하지 않음.
- 결국, 이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내람음모 · 선동혐의 기소는
  - 실체적 사실관계에 부합 X
  - 적법한 증거제시 X
  - 충족시키는 구성요건 X

=〉 무죄!

5.12 강연회 검토에 앞서

검토 순서

- 2013. 한반도 정세와 진보당 경기도당이 정세강연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과 경위
- 5. 12. 정세강연회에서 이석기 피고인 본 강연의 기조와 내용
- 분반토론에서의 발언내용과 정리발언
- 5.12 강연에서의 쟁점에 대한 검사의 주장과 그 부당성
- 피고인들의 언행이 내란음모,선동죄의 구성요건 부합 여부

5.12 정세강연회, 개최의 배경과 경위

5.10 및 5.12 정세강연회 개최의 배경

'2013년 3월~5월' 한반도 전쟁위기 전개과정

긴장고조시기

* 3월 05일 북한 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 정전협정 백지화 조치
* 3월 11일 북한 판문점 직통전화 차단
* 3월 19일 B-52 폭격기 비행훈련
* 3월 24일 합참은 한미간 공동국지도발계획에 22일 서명 발표
* 3월 26일 북한 인민군 최고사령부 성명, 모든 야전포병군집단들을 1호 전투근무태세
* 3월 29일 김정은 한밤에 긴급 작전회의 소집. 조선중앙통신 '전략군미본토타격계획' 보도

긴장 극대화

* 3월 31일 미국, F-22스텔스 전투기 2대 오산공군기지 도착
* 4월 04일 북, 첨단핵타격 작전 최종비준, 백악관에 정식통보
* 4월 05일 북한, 평양 주재 외교단에 브리핑, 10일까지 철수계획 제출 권고

긴장 완화

* 4월 11일 통일부 장관 성명, 북에 사실상 대화제의
* 4월 12일 존 케리 미 국무장관, 북한과 대화 원해
* 5월 07일 북, 1호 전투근무태세 해제

결국 객관적인 정세는 5.10, 5.12 정세강연회 개최 이전에 이미 북-미간의 전쟁위기의 최고점은 지난 상태

5.10 및 5.12 정세강연회 개최의 배경

통합진보당 반전평화주요활동

- 3.18. 진보당 '반전평화 실천단'구성
- 3.23. 전국 지역위원장단 긴급 연석회의 개최
- 4.26. 이석기의원국회본회의대정부질문'4자회담으로종전선언평화체제이끌어내자

경기도당 반전평화활동

- 반전평화실천단 조직사업
- 각 지역별 동시다발 1인 시위 등

피고인들의 반전평화활동

- 홍순석 : 2013. 3. '전쟁반대!평화실현!촉구 안양시 각계인사 기자회견"
- 한동근 : 2013. 4. "전쟁반대 평화실현을 위한 수원지역 156인 평화선언" 동참
- 조양원 : 온라인 선전 활동을 전개
- 김홍열 : 경기도당 위원장으로서 도당차원 반전평화활동
- 김근래 : 한반도 평화실현 서명운동('우리의 꽃은 너희의 총보다 강하다')

5.10 및 5.12 정세강연회 개최 경위

- 5.10 정세강연회 개최 과정

  경기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정세강연회 계획(일시, 강사, 장소) 수립(2013.4.29)

- 5.12 정세강연회 재개최 과정

  인원에 비해 장소가 넓어 집중도 떨어지고, 아이들 문제, 베이비시터 미배치, 부적절한 장소대관 등으로 재개최 결정

  해산 후 현장에서 임원회의 진행하여 5.12 정세강연회 장소, 시간 등 결정

검찰주장

✻ 경기도당 홈페이지에 미공지	**홈페이지 유명무실, 주요행사는 부위원장 등 체계를 통해 전달**
✻ 강연회 회의록 미작성	**소규모의 행사는 굳이 회의록에 남기지 않음**
✻ 장소대관자 명의가 경기도당이 아니라 개인	**1차 지방선거 준비학교는 학생위원회 명의로 예약**

5.12 정세강연회, 무엇을 말하고자 하였나

강연회 식순

- 민중의례, 여는 말
- 본 강연
- 질의응답
- 분반토론
- 분반토론 발표
- 마무리 발언

본 강연 요약

- 도입
- 본론
  - 현 정세의 특징은 무엇인가
  - 현 정세를 어떻게 볼 것인가
  - 현 정세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 마무리

본론1 현 정세의 특징은 무엇인가

✻ 요지

- 한반도 정세 3가지 키워드는 북한의 광명성 2호 발사, 3차 핵실험, 정전협정 무효화 선언
- 북미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이며, 미국의 대북정책도 비핵화에서 비확산으로 이동,
- 정전체제와 분단을 극복하고 항구적 평화체제와 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민족사적 대전환기

✻ 검사 주장

- "대한민국과 미국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었다."

✻ 반박

- 북핵에 대한 평가는 미 국방부 장관 청문회 발언, 미 국방정보국 보고서를 강연에서 인용
- 북미관계의 근본적 변화는 국내외 전문가, 학계 등의 주요한 견해 중 하나

본론1 현 정세의 특징은 무엇인가

* 요지
  - 현 정세는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전쟁
  - 항구적 평화체제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진보진영에 대한 탄압은 더욱 거셀 것
* 검사 주장
  - “주체사상에 입각한 정세인식을 드러내었다.”
* 반박
  - 전쟁이란 언급은 실제 교전상황을 염두에 둔 표현이 아님
  - ‘3, 4월과 같은 상황이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의미이자
  - ‘사상전, 심리전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전쟁 양상’을 가리킴
  - 89년 당시까지도 ‘청명계획’이란 이름의 예비검속이 유지되었고
  - 대상자가 1천명에 이르렀다는 것이 드러났음(국방부 과거사위)

본론1 현 정세의 특징은 무엇인가

"미국에게 선포한게 정전협정 무효화에요, 그 다음부터 전개된게 전쟁이야. 실제 **4월달은 전쟁**이에요."(13년 4월을 가리켜)

"지난 **3월달, 4월달**에 조선반도에 엄중한, 매우 엄중한 그리고 그 전에도 없는 새로운 단계의 **전쟁이 생기고 진행되고 있음**"

"역설적인데 **이번 4월**로 표현되는 가장 군사적 충돌이 첨예한 시기에 **전쟁 상황**이 첨예한 시기에"

검찰의 왜곡

이석기 피고인이 말하는 '전쟁'
= 향후 일어날 '전쟁'= 무장폭동의 계기

본론 2 현 정세를 어떻게 바라 볼 것인가

* 요지
  - 남의 관점에서만, 또는 북의 관점에서만 정세를 바라보는 것은 일면적
  - 우리민족과 외세의 대결이라는 정세의 본질을 보는 민족적 관점을 가져야
  - 한국사회를 책임지겠다는 견지에서 격변기를 준비하는 주체적 입장을 가져야
* 검사 주장
  - “김일성과 주체사상을 미화하고 선군정치와 미사일, 핵개발을 옹호했다.”
* 반박
  - 그해 4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남북미중 4자회담 통한 종전선언'을 총리에게
  - 제안하며 민족적 관점, 주체적 입장을 제시한 바 있음
  - 북을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주동적 역할을 강조하는 정세인식

본론 3 무엇을 할 것인가

* 요지
  - 진보진영에 대한 탄압이 예견되므로, 필승의 신념으로 무장해야
  - 항구적 평화체제 실현으로 나아가기 위해 물질기술적 준비를 갖추어야
* 검사 주장
  - “폭동을 위한 물질적, 기술적 방안을 발표했다”
* 반박
  - 물질 기술적 준비는 전쟁발발시의 군사적 준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
  - 전쟁발발 직전의 상황에서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 준비를 의미
  - 선전전 등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다양한 방식을 창조적으로 찾고자 던진 화두

5.12 본 강연 이후 진행상황

본 강연 이후 질의응답

* 요지

- ◇◇◇은 미국의 '전략적 인내'가 실패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으로 질문하여 이석기 피고인의 강연 내용에 의문을 표시
- 홍순석은 이석기 피고인이 강조한 '한반도 정세의 본질을 드러내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낼 것인가에 대해 질문
- ☆☆☆은 '물질 기술적 준비'의 의미를 알지 못해 질문

* 검사 주장

- 'RO'조직은 북한이 2013. 3. 5.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하자 현 정세를 '전쟁상황'즉 '혁명의 결정적 시기'가 임박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강연 등을 통해 이러한 정세인식을 조직원들 사이에 공유하였다

* 반박

- 지휘성원으로 주장되는 홍순석 피고인의 강연 이해가 높지 않으며, ◇◇◇ 등 참석자들의 정세 인식이 서로 일치되지 않음을 알 수 있음

*** 당시 강연 참석자들이 검사 주장대로 폭동을 결의하기 위한 일치된 인식이나 합의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임**

분반토론

* 개요

- 특정 결론을 이끌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생각을 나열하는 수준으로 토론 진행
- 물질, 기술적 준비란 용어에 대한 이해가 중구난방

* 검사 주장

- 각 권역의 발표 내용은 모두 '전쟁상황에 대비한 물질적 · 기술적 준비 내지 정치 · 군사적 준비'를 주제로 한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함

* 반박

- 사회자인 김홍열 피고인 "전시상황에 준해서 토론하면 된다"
- 이에 따라 '전시상황'을 '전쟁발발시'로 오해한 일부 토론 참여자들이 무기습득, 시설파괴 등 일탈적 발언을 한 것임
- 그러나 모든 분반에서 무기습득, 시설파괴 등의 발언이 나온 것은 아님
- 오히려 각 분반의 지역별, 토론 구성원별 특성과 사회자들의 성향에 따라 다양한 스펙트럼의 토론이 이루어진 것임

*** 내란음모의 구성요건인 특정시설을 파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폭동을 결의하고 합의한 사실은 전혀 없음**

이석기 피고인의 마무리 발언

* 요지
  - 핵무기보다 강한 사상의 중요성, 선전활동의 중요성, 일치단결을 강조
* 검사 주장
  -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 참가자들이 전쟁 발발시 지휘부의 총공격 명령에 따라 속도전으로 일체화된 강력한 집단적 힘을 통해서 각자의 초소에서 가능한 후방교란, 사회혼란 책동을 수행한다는 결의에 이르도록 하였음
* 반박
  - 마무리 발언은 전환기 정세에 대중의 창조적 힘과 지혜를 총동원한다면,
  - 오히려 현재의 위기국면은 통일의 새로운 기회로 전변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임
  - 총공격 명령은 수사적 표현

    2012. 6. 21. 선본 발대식 녹음파일에도 일부 참석자가 선거투쟁을 '총공격'으로 표현하기도 하였음

5.12 강연회
쟁점 및 검사 주장 반박

‘RO’ 동서남북 지역책 4인

김홍열
5.12 분반토론 지휘하에 있는
조직원 토론에 불참

북

중서

동

홍순석
5.12 분반토론 뜬구름

김근래
5.10 행사 시간보다 1시
간여 지각

남

이상호
5.10 행사 마감까지 도착 못함

“RO” VS “경기도당”

(A) “김근래 지휘원” → 사실 왜곡

- 지금오나 or 지금와 (O) 지휘원 (X) 명백하게 들려
- 이성윤 진술 어디에도, ‘지휘원’에 대한 지위 언급은 단 차례도 없어

(B) 이석기 피고인이 독단적으로 취소, 재소집 → 논리적 모순

- 행사 취소 공지는 김홍열 피고인이 한 것. 뒤이은 이석기 피고인 발언 어디에도 취소 언급 없어.
- 강연자 입장에서는 다음 행사 참석 권유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RO” VS “경기도당”

(C) 이석기 피고인이 실망, 불쾌감 표시하고 김근래 피고인 질타 → 과장, 논리비약

* 형식적으로 참여하지 말고 긴장된 한반도 정세에 걸맞는 마음가짐으로 임해달라는 당부
* 이석기 피고인과 경기도당 열성 당원들 간의 각별한 유대관계는 다른 녹음파일도에서 확인

(D) 호칭, 진행이 안동섭 지지 결의대회와 상이 → 과장, 논리비약

* 앞서 다른 행사에서도 ‘의원, 의원님, 대표, 대표님’ 등 호칭이 자유로와
* 노래, 묵상 등 진행은 장소, 상황 등에 따라 자연스럽게 판단하여 진행

“내란음모, 내란선동” VS “정세 강연”

(A) “혁명적 결의” => NLPDR을 완수하기 위한 폭력혁명의 결의

“당 사태에 대한 전진을 도모하는 자리가 아니라 혁명적 결의를 다지는 자리’ ➔ **악의적 추정**

* ‘결의’는 정당 및 사회운동단체에서 무수히 사용하는 일반적 표현의 하나
* 수사적 강조에 불과한 ‘혁명적 결의’를 폭력혁명의 결의로 연결짓는 것은 ‘공안적 추정’

“내란음모, 내란선동” VS “정세 강연”

(B) “조선의 백년의 역사” =〉 조선은 ‘북한’이고 백년은 ‘주체 연호 100년’

“60년 이래, 해방 이후에, 나아가서는 조선의 백년의 역사에 우리 민족의 새로운 전환” ➔ **악의적 추정**

* 정전 협정(1953년), 8.15 해방(1945년), 일제 국권강탈(1910년) 등 민족사적 사건 나열
* 조선민족이 외세의 침략과 수탈에 맞서서 싸워온 기간을 의미하는 은유적 표현 (예) 백년전쟁

"폭력혁명 결의" VS "반전평화"

- 검사 주장 근거

(A) '반전평화'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다 → **개념에 대한 무지**

* '반전평화운동'의 형태는 매우 다양 (예) 파병반대, 무기도입 반대, 군사훈련 반대 등
* 강연 주제인 '항구적 평화체제 실현'은 '반전평화운동'의 최종 목표

(B) 평화협정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 **문맥에 대한 몰이해**

* '기존 반전운동의 정당성과 의의는 여전하다'고 지적
* '항구적 평화체제로 나아가야지 평화협정 서명캠페인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

“폭동행위 선동, 결의” VS “100% 소설”

- 검사 주장 근거

(A) ‘물질기술적 준비’는 군사적 준비다

* 무력충돌을 막기 위한 근본적 반전평화운동, 즉 항구적 평화체제 실현운동이 절실함을 지적
* 관념적, 추상적 준비를 해서는 안 되고 실천적, 구체적 준비를 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한 개념
* 물질기술적 준비에서도 심리전, 선전전, 여론전을 위한 준비를 가장 중요하게 꼽았음

“폭동행위 선동, 결의” VS “100% 소설”

- 검사 주장 근거

(B) 권역별 토론에서 합의와 결의가 있었다

* 40여 분의 토론시간 중에서 참여자 절반 이상은 발언을 하지 않음
* 물질기술적 준비의 개념에 대해서도 중구난방으로 이야기하다가 마무리 못하고 마침
* 토론 내용의 일부만 발표되거나, 토론에서 나오지 않은 발표자 개인 의견도 언급

“내란음모, 내란선동” VS “정세 강연”

- 검사 주장의 자기 모순

(A) 보위수칙

“‘RO’의 주요한 징표는 보위수칙 준수이다” (검사 주장)

* 대부분 핸드폰을 끄지 않았고, 다수는 강연장 주차장에 차를 주차
* 그 자체로 보위수칙을 어기는 것이므로 주최자(주체)가 ‘RO’일 수 없어

(B) 참석자 분위기

“5.10 및 5.12는 혁명을 결의하는 자리이다” (검사 주장)

* 5.10 아이들 울음 소리 10회 이상, 5.12 아이 업고 온 참석자
* 5.12 강연 당시 청중들 폭소 42회 가량 확인

"혁명의 결정적 시기" VS "그런 언급 없다"

법정에서 뒤바뀌는 이성윤 진술 → **신빙성 결여**

* (국정원 진술 당시는) '내 개인의 판단이었고, 이석기 의원이 '혁명의 결정적 시기'라는 말 한적은 없다."
* 지금 와 생각해 보니 당시는 내가 혁명의 결정적 시기로 인식한 것이 아니다.

전 북한공작원 김정수 증인 신문 → **검찰 증인이 검찰 주장을 탄핵한 격**

* '지하조직이라는 'RO'직원 13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인다는 것 자체가 지하조직 특성과 맞지 않다.'
* '2013년 5월 13일 당시 정세는 혁명의 결정적 시기로 볼 수 없다."

“사전준비행위 했다” VS “모두가 허구이다”

(A) 국정원이 만들어 낸 지침

- ‘전쟁대비 3대 지침’은 국정원이 만들어낸 말. 실제 발언은 ‘지침 3가지’
- ‘연락수단, 음식물 준비’를 ‘미군기지 정보수집’으로 왜곡
- 지침을 받았다고 하지만 이후에 분공 부여나 이행, 보고 등 아무 것도 없었음

(B) 언어습관과 문맥을 무시하고 악의적 해석

-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라고 표현한 것. 활동가들이 통상 쓰는 어투
- 즉흥적, 충동적 발언임을 가리고 자기 말에 신빙성 부여하려고 사용한 표현
- 5.12 당일 ‘사전 준비 했다’고 발표한 사람은 이상호 피고인이 유일

“.....” VS “어떠한 행위도 없었다”

- 검사 어떠한 증거도 제시 못함
- 피고인들의 활동, 내란음모와 전혀 관련이 없었음
  - 가족동반 백두산 트래킹 중국 여행(홍순석 등)
  - 의정활동과 법안발의에 전념(이석기 피고인)

    : 종편 재승인 정책토론회 개최, KBS수신료 인상 정책토론회 개최 확정, 실용과학위성 '아리랑' 러시아 현지 발사참관

국가보안법 협의 유죄인가

정세강연이 반국가단체 활동 등의 동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검찰 주장의 전제가 되는 RO가 실체가 없는 허구의 조직에 불과
- 2013. 5. 12. 강연이 당시 한반도의 정세에 대한 것
- 한반도의 정세를 설명하는 키워드로 '북의 인공위성, 핵실험, 정전협정 무효 선언'을 사용
- 전달한 내용은 언론, 미행정부의 발표내용 등을 인용한 객관적 사실

-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동조' 행위
  -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헌재 1990. 4. 2. 89헌가113결정)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협 침해하고 영토를 침략하여 헌법과 법률의 기능 및 헌법기관을 파괴 마비시키는 것으로 외형적인 적화공작 등,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 체제를 파괴 · 변혁시키려는 것

- 당시 한반도 정세의 특징이 북의 핵실험 성공, 정전협정 폐기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전쟁위기 국면이고 장기적으로는 북미간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
- 내용 어느 부분도 국가의 존립 ·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실질적 위헌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적극적으로 북한의 주장이나 정책에 호응 · 가세한 바도 없음.
- 만일 북한의 태도를 소재로 정세를 분석하는 것까지 반국가단체 활동 등에 대한 동조행위라고 판단할 경우, 우리 사회의 외교 정책 분석은 불가능하며, '표현'의 자유가 설 자리는 없음.

‘혁명동지가’를 제창한 것으로 반국가단체 활동 등 동조에 해당하는지

- 혁명동지가는 1990년대 후반 많이 불리던 우리나라 민중가요.
- 가사의 내용이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라는 점은 ‘의심’일 뿐.
- ‘노래’를 제창하는 것 자체로 우리 체제에 무슨 위협이 되거나 위험성이 있는 것이 아님
- ‘혁명’의식을 고취하는 ‘민중의 노래’ 플래쉬몹에 대해서 누구도 문제제기를 한 바 없음

참고

1) 김용서, 조갑제 쿠데타를 적극적으로 언급하였으나 무혐의 처분

연합뉴스 ‘軍쿠데타.저항권 발언’ 김용서.조갑제씨 무혐의

KONAS.NET 대한민국 안보 인터넷 신문, 코나스넷 “군부쿠데타외 방법없다” 김용서 교수 강연 파문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이적표현물 소지와 관련하여

- 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 이적성 판단 :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의 존립 ·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 이적행위를 할 목적
  - 행위자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 행위자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때에는 표현물의 이적성의 징표가 되는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경력과 지위, 피고인이 이적표현물과 관련하여 제5항의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이적단체 가입 여부 및 이적표현물과 피고인이 소속한 이적단체의 실질적인 목표 및 활동과의 연관성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이적행위를 할 목적'

-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이적행위를 할 목적'의 근거
  - 이들이 모두 비밀지하혁명조직 'RO'의 조직원이라는 것 이외에는 주장한 바 없음
  - 그런데, 'RO'라는 지하혁명조직이 실재하지 않음
  - 피고인들의 '이적행위를 할 목적'을 인정할 근거 없음

‘진보적 민주주의란 무엇인가’가 이적표현물인지

- ‘진보적 민주주의란 무엇인가’의 내용

  - 개요 : 자주권 실현을 우선 과제로 내세우는 민주주의 이념, 민중주체의 새로운 민주주의 이념, 평화와 통일을 추구하는 민주주의 이념, 평등사회 ·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하는 민주주의 이념, 단결과 연대를 지향하는 민주주의 이념
  - 진보적 민주주의의 정강정책 : 나라의 자주권 실현을 위한 정강정책, 민중주체 민주주의체제 실현을 위한 정강정책, 한반도 평화와 민족통일 실현을 위한 정강정책, 민생 4대 기본권을 비롯한 사회적 평등 실현을 위한 정강정책,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실현을 위한 정강정책
  - 노동존중 사회, 교육의 공공성, 병 걱정 없는 사회, 집 걱정 없는 사회, 여성의 노동권 보장, 사회보장제도 구현

‘진보적 민주주의란 무엇인가’의 내용의 이적성?

- ‘수원진보연대 2013 진보 아카데미’ 자료집, 여러 필자들이 작성한 강의안을 편집한 것.
- 위 내용이 우리 사회에 실질적인 위험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별도로 입증한 바 없음.
- 우리 사회의 정책과 관련하여 채택할 수 있는 견해 중의 하나일 뿐, 전혀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 만일 위와 같은 견해조차 표현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정치세력도 현재의 정책과 다른 자신들의 대안이나 입장을 표할 수 없게 될 것.
- 그 정강정책이 국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지 여부는 국민들이 판단할 일.

변론을 마치며